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86
------------	-------

발의연월일 : 2023. 3. 21.

발의자 : 노옹래 · 강민정 · 김승남

김승원 · 김영진 · 김정호

김홍걸 · 설훈 · 양기대

이수진(비) · 이병훈 · 정성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수입되거나 판매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환경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운영과 업무 집행, 사업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한 근거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과도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지출로 불필요하게 운영비가 과다집행된 점이 지적되어, 그 운영이 실제 자원 재활용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 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조합과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업무 및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음을 보다 명확  
히 규정하는 등 환경부 관리·감독권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4 신설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2.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4호”를 “제14호,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7조부터 제28조의3까지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16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u>제36조제1항</u>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u>조합 및 유통지원센터</u>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 ----- <u>제36조제1항 및 제2항</u>-----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 -----.</p> <p>1. <u>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u> 2. <u>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 <u>&lt;신 설&gt;</u></p>	<p>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1. <u>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u> 2. <u>사업결산보고서</u> 3. <u>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u></p>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 ·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 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 · 확인 ·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  
-----  
-----.

⑤ -----  
-----제14호,  
제2항-----  
-----  
-----  
-----.

<p>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항</u>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 ----- ----- <u>제1항 및 제2항</u>----- ----- ----- -----. ----- ----- ----- ---.</p>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u>제36조제1항</u> 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u>제36조제1항 및 제2항</u> ----- ----- -----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제36조 제3항</u> 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생략)	3. <u>제36조 제5항</u> ----- ----- ----- ④ (현행과 같음)
--	---